

폭력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실시 계획

■ 학내 전구성원 대상 교과목개설, 교육이수 의무화

1. 목적

-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으로 학내 올바른 성문화 확립과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함.
-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 제고와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.

2. 근거 : 현행법에 의거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

- 2017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(학생상담센터-08 / 2017. 3. 22. /총장님결재특)
-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
-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6조

3. 교육방법 : e-learning 체계 (e-class 활용-동영상교육)

4. 개설교과목명 : 학생-[인권의식함양교육] / 교직원 등-[직무연수]

5. 대상 : 학내 전구성원

6. 분반 구성 : 총20개 (학부 17개/대학원 1개/교원(시간강사 포함) 1개/ 직원,조교,기타 1개)

7. 내용 : 폭력예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

1) 학생

①성폭력예방교육 ②가정폭력예방교육 ③장애인식개선교육

2) 교직원 및 기타

①성희롱예방교육 ②성매매예방교육 ③성폭력예방교육 ④가정폭력예방교육 ⑤장애인식개선교육

8. 온라인 개강 시기 : 9월 25일 예정

9. 교육이수 기간 : 10월 31일까지

10. 교육안내

- 1) 그룹메일 및 학부를 통해 공지
- 2) 교육이수율 수시 점검 후 독려 예정

11. 이수 현황 보고 : 11월 교무회의(예정)

12. 협조부서 : 인사처(교원, 직원)/교무처(시간강사, 조교)/대학원/종합행정처(노무직, 용역직 등)

13. 정부 관련부처 : 여성가족부, 교육부